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848

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 회부

다. 상정결과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(2012년 6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복지건강실장 김경호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
- 의료분야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대혈관련 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

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(1) 시설 개요
 - 명칭: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(2006. 5. 11. 개소)
 -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보라매병원 1,10,11층
 - 시설규모 : 건물 3,089㎡(1층 200㎡, 10층 2,129㎡, 11층 760㎡)
 - 인력 : 현원 12명 은행장 1명, 의료관리자 3명, 관리직원 8 명
 - 수탁자 : 서울대학교병원(대표 정희원)
 - 위탁기간 : 2010. 1. 1 ~ 2012. 12. 31(3년간)

(2)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3. 1. 1 ~ 2015. 12. 31)
- 위탁업무
 - 제대혈 기증 및 기증 제대혈 저장 관리에 관한 사항
 -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, 검사, 이식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 항
 - 그 밖에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이행에 관한 사항
 -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-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
- 소요예산 : 1,549,262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 태 호)

가. 위탁사무의 개요

- "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"은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체계 구축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, 지난 2006년 "서울특별 시 공여 제대혈은행"이란 이름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 - 동 위탁사무는 제대혈 은행과 줄기세포치료센타 운영을 통하여 제대혈 이식과 세포치료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난치병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, 기증제대혈 은행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.
 - 동 위탁사무는 '기증제대혈 지속적인 보관 및 품질 강화', '제대 혈 이식 활성화', '임상시험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및 다 국적 네트워크 구축', '고품질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 지원'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.

나.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

-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동 사무는 단순히 기증제대혈을 보관하고 이식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, 기증제대혈을 이용하여 줄기세 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바,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민간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동 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임.
- 특히 동 사무는 학계와 의료계,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

중요하므로 이를 외부 민간조직에 위탁수행하게 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동 위탁사무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- 5. 토론 요지 : 없 음
- 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848

제출년월일: 2012년 6월 8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
- 나. 의료분야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대혈관련 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 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○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(2006. 5. 11. 개소)

○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보라매병원 1,10,11층

○ 시설규모 : 건물 3,089 m² (1층 200 m², 10층 2,129 m², 11층 760 m²)

○ 인력 : 현원 12명 - 은행장 1명, 의료관리자 3명, 관리직원 8명

○ 수탁자 : 서울대학교병원(대표 정희원)

○ 위탁기간 : 2010. 1. 1 ~ 2012. 12. 31(3년간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3. 1. 1 ~ 2015. 12. 31)
- 위탁업무
 - 제대혈 기증 및 기증 제대혈 저장 관리에 관한 사항
 -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, 검사, 이식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이행에 관한 사항
 -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-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
- 소요예산 : 1,549,262천원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2007.1.1.~2009.12.31.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(보라매병원 재위탁)
 - 2010.1.1.~2012.12.31. 서울대병원 위탁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이용한 시민들의 난치병 치료 와 고령화·기후변화·방사능피폭 등에 따른 새로운 질병발생시 치료제 개발·연구에 대한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 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또한 현재 제대혈은행 운영 및 국제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,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의료분야의 전 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 법률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)
 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 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 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 무내용) 제5호
 - 5. 시립병원, 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기 타 : 해당없음